
「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(X&D)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2023. 3.


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
Korea Core Industrial Technology Investment Association

2023년 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(X&D) 참여기업 모집공고

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「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(X&D)」와 관련하여 해외기술도입*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진출 확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* M&A, 지분투자, 합작법인 설립, IP 인수 등

2023년 3월 30일
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

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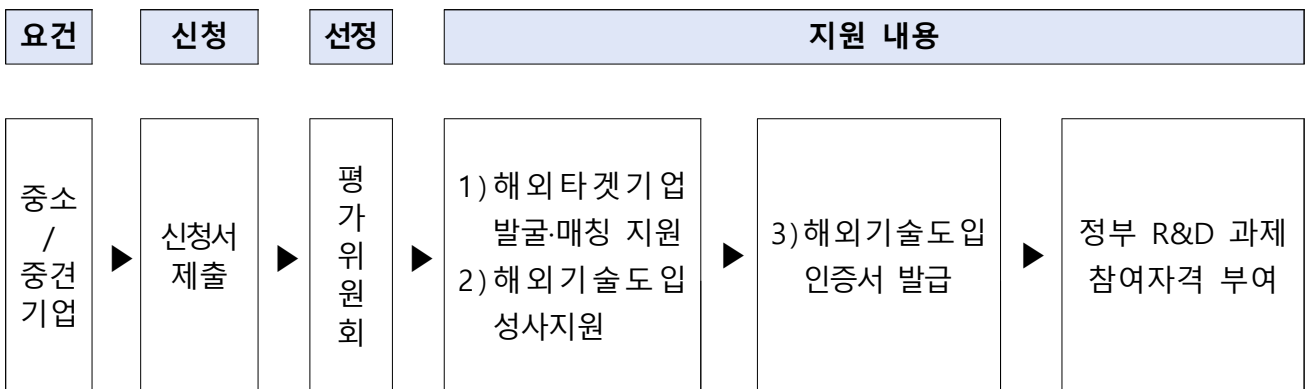
- **사업목적**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 기술확보를 통해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, 해외 파트너 협력 기회 모색, 제휴 가능성 타진 등 국내기업의 '글로벌 개방형 혁신'* 활동 촉진을 위함

* 글로벌 개방형 혁신 : 국경을 초월한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, 지분투자 등 견고한 경제적 공동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혁신활동

- **지원대상** :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50개사 내외*
(해외기술도입성사지원 10개사)
* 신청일자 기준, 선착순 마감
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의 기업

□ 지원절차



□ 항목별 지원내용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
<p>1) 해외 타겟기업 발굴·매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기업 M&A 매물정보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ITIA 글로벌 M&A 자문기관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정보. 신청기업별 매칭수요가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제공 • 기술별 특허, 품목별 제품 등 기반 해외기업 정보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개요, 재무현황, 지배구조, 보유특허 현황, M&A·투자현황 등 세부정보 제공 • 해외기업과의 기술 확보 전략 수립, 협력의사 타진, 추가 정보 발굴 등 오프라인 방식의 매칭 지원 						
<p>2) 해외기술 도입 성사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가치평가, 법률 실사, 회계 실사, M&A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최대 2,000만원 지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80%,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%까지 지원 • 총 사업비(100%, 공급가액 기준)의 구성 : 정부지원금 80% 이하 + 민간부담금 20% 이상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총 사업비 구성 (예시, 중소기업)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6 1070 1394 125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6 1070 563 1167">총사업비 (예시)</th> <th data-bbox="563 1070 975 1167">정부지원금</th> <th data-bbox="975 1070 1394 1167">민간부담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6 1167 563 1256">2,500만원 (100%)</td> <td data-bbox="563 1167 975 1256">2,000만원 (80%)</td> <td data-bbox="975 1167 1394 1256">5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업이 자문을 구하는 '실행기관'*에 총 사업비(100%)를 먼저 지급하면, 정부지원금(80%이하)를 '신청기업'에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무법인, 회계법인, 특허법인, M&A자문사 등 컨설팅 수행기관 ※ 신청기업이 실행기관에 선지급한 민간부담금에 대한 증빙서류와 추후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실행기관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 	총사업비 (예시)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	2,500만원 (100%)	2,000만원 (80%)	500만원 (20%)
총사업비 (예시)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					
2,500만원 (100%)	2,000만원 (80%)	500만원 (20%)					
<p>3) 해외기술 도입 인증서 발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IAT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(X&D)*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자격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: 10억원 이내/년, 최대 3년 이내 ** 해외기술도입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,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*** 공동R&D 과제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는 KITIA 홈페이지 (www.kitia.or.kr) [알림마당]-[사업공고]-[2023년 전략기술형(글로벌기술도입형)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] 참조 						

2

신청 및 접수

□ **공고기간** : '23. 3. 30. ~ '23. 12. 31.

□ **신청기간** : **공고일 이후 연중 상시**

□ **신청방법**

- (접수 이메일) tech@kitia.or.kr
- (문의처) KITIA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전략팀
 - 변재효 과장(☎ 02-6000-7961 / ✉ hyo@kitia.or.kr)
 - 석근일 연구원(☎ 02-6000-7966 / ✉ geunilseok@kitia.or.kr)

□ **제출서류**

제출서류	제출방식
① 해외기술도입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비밀유지협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3개년도 재무제표 or 감사보고서 ⑦ 중소기업 or 중견기업 확인서 ⑧ 기업소개자료(IR자료 등, 별도양식 없음) ⑨ 기술도입계약 추진증빙(NDA, LOI, MOU 등)	사업 담당자와 미팅 후, 이메일 신청

3

선정평가

평가항목	세부항목
추진역량 및 지원타당성 (50)	조직역량(10), 재무역량(10), 추진경험(5), 지원타당성(25)
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(30)	목표설정(15), 추진계획(15)
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(20)	기대효과(10), 파급효과(10)

[붙임]

1. 해외기술도입 인증 발급기준

□ 사업참여기업이 해외기술도입의 일환으로 체결한 계약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기술개발과제 신청자격 부여(인증서 발급)

- *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, KITIA 신청서 재접수를 통해 발급을 진행함. 인증기준은 당해연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진행함.
- ** 인증서는 발급 직후 도래하는 기술개발과제에 접수하며 효력을 다함.

①-1 해외기업*의 지분을 50% 초과(혹은 30%를 초과하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)하여 취득하는 계약**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- * 외국인(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)이 지분 등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외 설립된 법인
- ** 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한 납입으로 인증기준을 만족함

①-2 해외기업과 영업양수 혹은 특허권을 포함한 자산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※ 단, ①항의 해당하는 계약에 한해, 계약서상 주체와 동일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대상을 달리할 수 있음.

② ①총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1/2 이상(동시에 지분율 10% 이상)의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의 지분, 혹은 ②지분율에 상관없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*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- * 지분인수 계약서상 기술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③ 해외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양수 또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*을 완료해야 함

- * (필수제출 서류) 특허등록원부, 해외기업 보유특허 List

④ 해외기업과 상호출자를 통한 신규합작법인*을 국내에 설립하여 ①신규합작법인에 대한 해외기업의 출자금이 총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1/2 이상이거나, ②해외기업의 신규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% 이상일 경우

- * 합작법인설립 계약에 기술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기술도입계약 체결 시 금기사항

기술도입 계약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- ① 사업참여기업 혹은 소속된 임직원이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해외기업과의 인수계약 또는 투자계약
-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(잔금지급일)까지 1년을 경과하지 않는 인수계약(단,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)
- ③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 금지기간(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) 이내에 상환 또는 회수를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
- ④ 기타 정부 기술개발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

*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

- 상법 제542조8의 6호(주요주주) :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
-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(특수관계인)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30% 이상의 출자 혹은 그 밖에 이사·감사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

* 협약해약 사유

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 금지기간(투자계약체결일 또는 인수 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) 이내에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
- ② 인수한 해외기업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증대상이 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